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Standards Administration
Wage and Hour Division

요약문서 #43: 공정근로기준법상 비농업부문의 미성년자 노동법 조항

이 요약문서는 비농업분야에 적용되는 연방 미성년자 노동법 조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농업분야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자신들의 개발에 중요한 긍정적인 조기직업을 젊은 근로자들이 찾도록 돕고 있으나 그 노동은 안전해야 한다. 기준법상 미성년자 조항은 젊은이들이 일할 때 그들의 건강, 안전이나 교육기회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고용주들은 기준법 적용시 자격조건과 같은 조건하에 미성년자 조항의 규정에 적용된다.

미성년자들이 작업장에서 부상당하고 심지어 사망한다는 사실은 불행한 일이다. 전국 직업안전 건강 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21만명의 미성년자가 작업장에서 부상을 당하며 이 중 7만건은 응급실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과 주법은 미성년자의 고용을 규제하며 연방과 주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에서 더 엄한 기준이 적용된다.

연방법상 미성년자 조항은 많은 주법들과 달리 다음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 “취업허가”의 취득
- *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하루중 노동시간이나 길이
- * 고용관계가 없을 경우 법적용
- * 휴식, 식사시간이나 복지혜택
- * 차별, 괴롭힘, 언어 또는 신체적 학대나 도덕기준

최저임금 기준

공정근로기준법과 연방규정 29, 570편은 미성년자를 위한 근로시간과 근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할 수 있으나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탄광이나 제조업에서 일할 수 없고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노동부 장관이 위험하다고 규정한 직종에서 일할 수 없다.

- 18**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면 더 이상 연방 미성년자 노동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 16** 16세나 17세 미성년자는 노동부 장관이 규정한 위험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무제한의 시간을 일할 수 있다.
- 14** 14세나 15세 미성년자는 학교시간외에서 다양한 비제조업과 비위험직종에서 구체적인 규정아래 제한된 노동시간동안 일할 수 있다.

14세 미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기준법이 적용되는 비농업분야 직종에서 일할 수 없다. 이 미성년자들은 기준법에서 제외되는 고객에게 신문돌리기와 연기활동등 직종에서 제한되 일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또 개인집에서 잡다한 일을 하거나 비정규적으로 아기 돌보기를 할 수 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금지된 위험 직종(The Hazardous Occupations Orders: HOs)

공정근로기준법은 연방 노동부장관이 규정한 비농업분야의 특히 16세, 17세 미성년자에게 위험하거나 건강과 안전에 해롭다고 규정한 직종의 최저 자격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성년자 규정 3번 조항은 14-15세가 위험직종으로 분류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 현재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금지된 17개의 직종은 다음과 같다:

1. **폭약제조나 쌓기**-폭약을 제조하거나 창고에 쌓을 수 없으나 소매상에서 폭약 판매, 권총판매, 사격장, 경찰서에서는 일할 수 있다.
2. **자동차 운전이나 조수**-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자의 조수로 돕는 일을 금지한다(예외적으로 17세 미성년자는 주간에 특별한 경우 제한된 횟수에 한해 자동차나 소형 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
3. **탄광업**-탄광업의 대부분 직업금지.
4. **벌목업과 목재업**-벌목과 가공 (장작패기 포함)업, 제재소의 대부분 직업 금지
5. **목재용 자동기계**-체인톱, 자동 못박기, 샌더스등 대부분 동력사용 기계 사용금지.*
6. **방사능물질에 노출**-방사능물질에 노출금지.
7. **기중기**-포크리프트, 비자동 엘리베이터, 하이 리프트 트럭을 포함한 밥켓과 크레인과 같은 들어올리는 동력사용 기계의 사용금지 (스키장의 리프트나 바다샤 또는 주유소의 기중기는 제외).
8. **금속 조형, 펀칭 또는 절단기**-동력사용 금속 가공기계 사용금지.*
9. **석탄을 제외한 탄광업**-철광산, 종합광산과 지하탄광을 포함한 다른 광산, 채석장.모래.자갈 작업금지
10. **동력사용 육류가공기계, 도살, 육류포장 공장**-미트 슬라이서, 미트 차퍼등의 모든 장소에서 작동금지 (식당, 식료품점등). 이 금지조항은 이 기계들을 육류외에 치즈와 야채에 사용할 때도 적용된다. 도살, 육류포장 공장의 대부분 직종이 금지된다.*
11. **자동 제빵기계**-빵반죽기, 반죽밀기, 반죽절단기등 동력사용 제빵기의 모든 장소에서 작동금지.
12. **동력사용 종이처리 기계**-페이퍼 베일러, 페이퍼박스 컴팩터, 프린팅 프레스등 동력사용 종이처리 기계작동 금지. 16-17세는 종이를 기계에 넣을 수는 있으나 특정조건하에서 특정 페이퍼 베일러와 페이퍼 박스 컴팩터를 작동하거나 종이를 기계에서 꺼낼 수 없다.*
13. **벽돌, 타일과 유사제품 제조**-벽돌, 타일과 유사제품의 제조금지.
14. **전력사용 원형톱, 밴드톱과 절단기**-절단되는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금지.*
15. **철거작업, 건물.선박폭파폐기 작업**-거의 모든 폭파.폐기작업 금지. 그러나 제한된 리모델링이나 수리는 가능하다.*
16. **지붕작업**-지상작업과 기존지붕 제거작업을 포함한 지붕작업의 대부분 작업금지.*
17. **땅파기작업**-4피트 이상의 구덩이파기와 파헤치기등 대부분 작업금지.*

* 16세 이상의 정식 프로그램에 등록된 견습생과 학생취업생의 경우 HOs 5, 8, 10, 12, 14, 16과

17 조항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된다.

HOs 5, 8, 10, 11, 12, 14 조항에서 사용된 단어 '작동'은 일반적으로 이 기계의 준비작업, 조정, 보수, 오일링과 청소를 포함한다.

14, 15세 미성년자의 가능노동시간과 비농업분야의 직업

미성년자 노동규정은 하루중 특정 근로시간과 길이, 업계와 직종을 제한한다.

미성년자 노동규정 제 3번 CFR 파트 570, 서브파트 C, (CL Reg 3)는 14.15세 미성년자의 하루중 노동시간과 길이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 * 수업시간외*
- * 등교일중 3시간이하.
- * 휴일중 8시간이하.
- * 학기내 주중 18시간 이하.
- * 방학중 주중 40시간 이하.
- *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6월1일에서 노동절 휴일까지 기간동안은 오후 9시까지 연장.
- * 수업시간은 해당 미성년자가 일하면서 거주하는 지역공립학교에 의해 판단된다 - 이 시간은 미성년자가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나 가정학교에 다닐 경우도 해당된다.
- * 14.15세 미성년자는 대부분 사무직과 소매.식당업에서 일할 수 있으나 제조업이나 탄광에서 일할 수 없다.
- * 이 미성년자들은 위험작업이나 또는 교통수단, 건설, 창고, 통신과 공공시설에 관련된 직종에서 일할 수 없다.
- * 잔디깎기나 잡초제거기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 사무실의 기기들과 디시워셔, 토스터, 덤웨이터, 팝콘 제조기, 밀크셰이크기, 커피 그라인더와 같은 식당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
- * 식료품 싸담기, 사무직, 선반에 물건쌓기, 캐쉬어, 그리고 고객앞에서 하는 가벼운 요리등 직종에서 일할 수 있다. 14.15세 미성년자는 작업시 빵을 굴 수 없다.

직업경험과 탐구 프로그램(WECEP)

이 프로그램은 14.15세 미성년자에게 유익하도록 참가자의 필요, 관심과 능력에 맞게 만들어진 교육적 직업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성년자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열의를 가지도록 하며 직업시장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주의 교육부는 임금시간과의 허가하에 2년간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미성년자 규정 제3항은 학기중 14.15세의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있다.

- * 수업시간중 일할 수 있다.
- * 수업일중 최고 3시간, 수업주일중 23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 * 또한 임금시간과 책임자의 허가하에 제조업, 광업이나 금지된 17가지 위험직종을 제외하고 원래 금지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다.

시행과 벌금

미전국 각지의 임금시간과 조사관들은 공정근로기준법의 미성년자조항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받은 대표로서 기준법상 미성년자조항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임금, 노동시간과 다른 고용환경과 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미성년자조항의 위반자는 위반 미성년자 1인당 최고 \$11,000 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 오버타임, 또는 미성년자 노동조항을 위반하고 만들어진 상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근로기준법은 이러한 “핫굿” (“hot goods)의 유통을 막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준법은 또 미성년자 노동조항 위반자들이 법준수를 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추가 위반의 경우 법정모독죄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미성년자 노동조항을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과 최고 \$10,000의 벌금, 2차 유죄판결 시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더 자세한 정보는 임금시간과 인터넷 사이트 <http://www.wagehour.dol.gov> 또는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무료전화 1-866-4USWAGE (1-866-487-9243)에 하면 얻을 수 있다.

이 문서는 미연방 노동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요약 문건의 하나로 전반적인 소개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견해로서 효력은 없다.

U.S. Department of Labor
Frances Perkins Building
200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10